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혜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02
----------	-------

발의연월일 : 2018. 5. 23.

발의자 : 손혜원 · 김경협 · 김영호

문희상 · 박주민 · 서영교

신창현 · 안규백 · 이춘석

홍의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특히 직역된 일본어나 고유 일본어를 한자로 표기한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을 경우엔 널리 쓰이는 한자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필증(畢證)은 “어떤 일을 마쳤다는 증명서”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 일본식 한자어로서 법제처의 정비대상 용어로도 지적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상 “준공확인필증”이라는 용어를 “준공확인증명서”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법률 제 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준공확인필증을”을 각각 “준공확인증명서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 -----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